

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7. 5. .
 발 의 자 : 박돈규 의원
 (찬성의원 24인)

1. 제안이유

- 각종 건축공사현장에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·용도·설계자·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소장, 책임감리원 등 공사책임자의 연락처와 같이 민원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부족
- 이에 각종 건축공사현장의 건축주, 현장소장, 책임감리원, 담당부서 등의 실명 및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건축허가표지판의 양식을 규정함으로써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고 공사현장 민원 발생 시 공사현장 책임자와의 신속한 연락체계 제공
- 이를 통하여 시공 및 안전관리의 부실방지 및 건축 관계자의 공사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공사현장 주변의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공개행정 구현으로 공사관계자 및 담당공무원간 상호 신뢰 구축이 가능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건축법」제19조의2제5항 및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표지판의 서식을 제공하여 공사책임자의 실명 및 연락처 등 민원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 (「건축법」 제19조의2제5항,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8조)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참고자료 :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 (건축허가표지판) 건축법 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 표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지 제8호서식]

<p>건축허가표지판</p> <p>허가번호 : 000-00-00000</p>			
공사명	○○ 신(증·개)축공사		
허가일자	년 월 일		
대지위치			
대지면적(m ²)			
건축면적(m ²)		건폐율(%)	
연면적(m ²)		용적률(%)	
주용도		층수	지하○층, 지상○○층
공사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건축주	○○○	(전 화) (E-mail)	
설계자	○○건축사사무소 대표 ○○○	(전 화) (E-mail)	
시공사	○○건설(주) 현장대리인(소장) ○○○	(전 화) (E-mail)	
감리자	○○건축사사무소 책임감리원 ○○○	(전 화) (E-mail)	
관련부서	○○(시, 구·군)청 건축과 ○○○ 홈페이지 :	(전 화) (E-mail)	

- 비 고 : 1. 건축주, 설계자, 시공사, 감리자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기재하여야 한다.
 2. 이 표지판의 규격은 건축공사내용·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<p>제16조의2 (건축허가표지판) 건축법 제19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건축허가표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.</p>

관계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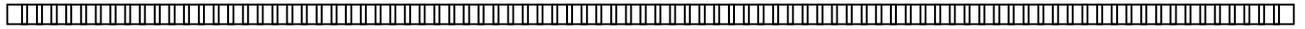
[건축법]

제19조의2 (건축시공) ①-④(생략)

⑤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11.8>

[건축법 시행규칙]

제18조 (건축허가표지판)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·용도·설계자·시공사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[본조신설 2006.5.12]



참 고 자 료

1. 1990년대 사용된 건축허가표지 서식

[건축법] (1991년 5월 31일 전문개정으로 도입, 1999년 2월 8일 개정 시 삭제)

제8조 (건축허가) ①-⑧ (생략)

⑨공사시공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[건축법 시행규칙] (1992년 6월 1일 시행, 1999년 5월 11일 개정 시 삭제)

제9조 (건축허가표지) ①법 제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표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표지는 당해건축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.

[별지 제7호서식]

건 축 허 가 표 지			
허가번호 □□□-□□-□□□□□□			
건축주	① 성 명		
	② 주 소	(전 화)	
설계자	③ 성 명		
	④ 사 무 소 명	(전 화)	
공사감리자	⑤ 성 명		
	⑥ 주 소	(전 화)	
공사시공자	⑦ 성 명	(전 화)	
	⑧ 주 소	(전 화)	
⑨ 허가일자	년 월 일		
⑩ 대지위치			
⑪ 건축면적	m ²	⑫연 면 적	m ²
⑬ 주 용 도	⑭층 수		지상 () 지하()
⑮ 공사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		(시장, 군수, 구청장)	(인)

30304-12811 일
92. 5. 1 승인

350mm × 500mm